

[0 : 적정 / △ : 보완필요 / X : 부적정 / 해당없음]

구분	점검사항	결과	개선계획
3대 기초안전 수칙	•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•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		
	•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•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지		
추락	•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,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조치 여부		
	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·울타리·수직형 추락방망·덮개 등 설치 여부		
	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		
	•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여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		
	•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		
	•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 금지를 하였는지		
	•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-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- 3.5m 초과 높이 사용금지 -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- 2인 1조 작업 준수 - 안전모·안전대 착용 철저 등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		
끼임	•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건널다리 등 설치 여부 * 컨베이어, 혼합기, 산업용로봇, 분쇄·파쇄기, 사출성형기 등 사고 다발 기인물 덮개·방책 등 설치		
	• 기계 등 정비·청소·수리·검사·교체·급유 등 작업 시 운전정지 • 운전정지 시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		
	• 기계·기구·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임의 해체 등 금지		
	•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 위치에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설치 여부		
	• 기계 또는 방호 장치의 결함 발견 시 정비 후 사용하도록 하였는지		
부딪힘	• 기계·장비 작업반경 등 위험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지		
	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,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, 작업지휘자 지정 등 조치 여부		
	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장 내 제한속도를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지		